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40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7.

발 의 자: 장경태・임호선・홍성국

정청래 · 한준호 · 김남국

이원택 · 이수진 · 이성만

임오경 · 김병주 · 이용우

최혜영·장철민·김민철

오영환 · 주철현 · 신현영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25조제11항).

법률 제 호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1항 전단 및 후단 중 "지불"을 각각 "지급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건축물의 공사감리) ① ~	제25조(건축물의 공사감리) ① ~
⑩ (생 략)	⑩ (현행과 같음)
①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	①
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	
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	
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	
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	
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제2	
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	
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	
에 따라 감리비용을 <u>지불</u> 하여	지급
야 한다. 이 경우 허가권자는	l
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	
이 <u>지불</u>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	<u>지급</u>
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.	
① ~ ⑭ (생 략)	① ~ ⑭ (현행과 같음)